

의안번호	2213154
의 퇴 인	김동아 의원
회 답 일	2025. 11. 6.
추 계 번호	25A5274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121조의2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의 적용 배제)	소기업·소상공인공제에 관하여는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의무규정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등 근거 규정
1	안 제121조의2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의 적용 배제)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상세 사유

- 개정안은 현행법 제3조1)에 따라 설립된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소기업·소상공인공제(이하 ‘노란우산’)이 광고 등을 할 때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지 않도록 규정함
 - 현재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이 국내외의 홍보매체에 광고, 홍보, 계도 및 공고 등(이하 “정부광고”)을 할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요청하도록 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정부광고 업무를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²⁾되어 있음

1)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종류 등) ①중소기업협동조합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

-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정부광고를 의뢰하는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으로부터 광고료의 최대 100분의 10에 한하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음
- 현행법에 의하면 노란우산이 정부광고를 할 경우 한국언론진흥재단을 통하여 광고를 의뢰하여야 하고 100분의 10에 한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함
- 그러나 개정안에 따라 노란우산이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되면, 한국언론진흥재단을 통해 광고를 의뢰하여야 할 의무와 상기 수수료를 납부할 의무가 사라지게 됨

- 개정안에 따라 노란우산이 한국언론진흥재단에 광고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게 되면 지역신문발전기금과 언론진흥기금 수입이 감소³⁾할 가능성이 있음
-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정부광고에 따른 수수료를 받아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제13조에 따른 지역신문발전기금과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⁴⁾에 따른 언론진흥기금의 출연금 등으로 활용함

2)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 제5조(광고의뢰) 정부기관등의 장은 소관업무에 관하여 홍보매체에 정부광고를 하려는 경우 소요 예산, 내용, 광고물 제작 여부 등 정부광고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 제10조(정부광고 업무의 위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부터 제8조까지에 따른 정부광고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정부광고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나 단체(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수수료는 정부광고료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 ④ 수탁기관은 제2항에 따라 징수된 수수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지원에 사용하여야 한다.
1. 신문, 인터넷신문, 인터넷뉴스서비스, 뉴스통신 및 잡지의 진흥을 위한 지원
 2. 방송, 광고 진흥을 위한 지원
 3. 그 밖에 언론진흥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⑤ 그 밖에 수수료의 징수와 사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3)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르면 재정지출의 증가뿐만 아니라 재정수입의 감소 또한 법안 비용추계의 대상이 된다.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 제2조(정의) 1. "비용추계서"라 함은 발의·제안 또는 제출되는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재정지출의 순증가액 또는 재정수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 (이하 생략)
- 4)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제34조(언론진흥기금의 설치 및 조성) ① 신문·인터넷신문·인터넷뉴스서비스 및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잡지(이하 "잡지"라 한다)의 진흥을 위하여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언론진흥기금을 설치한다.
- ② 언론진흥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의 출연금
 2.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3. 개인 또는 법인으로부터의 출연금 및 기부금품
 4. 언론진흥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 [참고자료 1]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정부광고 실시 현황

- 다만, 노란우산은 현재(2025.9월)까지 한국언론진흥재단을 통하여 정부광고를 실시한 적이 없으므로 개정안에 따라 향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금 수입의 규모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 [참고자료 2] 노란우산의 광고비 집행 내역

-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의 감소 규모는 노란우산의 광고에 따른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수수료 감소분이 될 것이나, 현 시점에서 향후 노란우산의 광고 건수와 광고료 등의 규모를 파악할 수 없으므로 재정 감소분을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음
- 따라서 현 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감소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개정안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추계세제총괄과	박선아	권아영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박선아	02-6788-4652	sunapark@nabo.go.kr

[참고자료 1]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정부광고 실시 현황(2023~2025.9월)

(단위: 백만원, 건)

매체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1~9월	
	건수	수수료	건수	수수료	건수	수수료
인쇄	86,189	23,549	84,824	23,768	59,568	16,266
방송	15,671	30,570	15,506	29,068	8,614	14,088
옥외	30,210	21,592	29,916	21,770	19,802	13,139
인터넷	104,311	30,666	111,164	31,888	81,641	19,303
해외	1,063	3,165	914	2,800	526	891
제작 등 ¹⁾	8,462	—	8,202	—	4,822	—
합계	245,906	109,542	250,526	109,293	174,973	63,686

주 1) 매체비 외 광고제작 등에 소요된 경비
자료: 한국언론진흥재단

[참고자료 2] 노란우산의 광고비 집행 내역(2023~2025.9월)

(단위: 백만원)

매체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1~9월
방송	5,635	4,921	3,115
옥외	4,524	4,548	1,803
디지털	1,052	1,302	1,506
지면광고	1,253	1,051	509
합계	12,463	11,822	6,934

자료: 중소기업중앙회